

수색·중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(수색8구역) 정정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257호(2025.5.8.)로 결정고시한 수색·중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(수색8구역) 내용 중 일부 착오 기재된 사항이 있어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5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2025년 10 월 30 일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

[1] 정정사유 : 정비계획 결정 조서 중 ‘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’ 항목 내 적용기준을 명기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함

[2] 정정내용

<정정 전>

- 라. 재정비촉진지구의 개요
- 17)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
- 나) 수색8재정비촉진구역
- (2) 정비계획
- ⑥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

구분		획지면적(㎡)			연면적(㎡)			세대규모	세대수		
	계	기정	증감	변경	기정	증감	변경		기정	증감	변경
변경	8-1	20,372.0	증) 266.0	20,638.0	6,289.7	증) 355.9	6,645.6	계	99	증) 5	104
								전용면적 40㎡이하	40	증) 5	45
								전용면적 40~50㎡	40	—	40
								전용면적 50~60㎡	19	—	19
								전용면적 60~85㎡	—	—	—
	적용 기준	● 임대주택은 연면적의 10.06%이상 (92세대) ※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(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93호, 2022.12.12.) ● 주거전용면적 40㎡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의 40% 이상을 건설할 것									

<정정 후>

라. 재정비촉진지구의 개요

17)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

나) 수색8재정비촉진구역

(2) 정비계획

⑥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

구분		획지면적(㎡)			연면적(㎡)			세대규모	세대수		
	계	기정	증감	변경	기정	증감	변경		기정	증감	변경
변경	8-1	20,372.0	증) 266.0	20,638.0	6,289.7	증) 355.9	6,645.6	계	99	증) 5	104
								전용면적 40㎡이하	40	증) 5	45
								전용면적 40~50㎡	40	—	40
								전용면적 50~60㎡	19	—	19
								전용면적 60~85㎡	—	—	—
	적용 기준	● 임대주택은 연면적의 10.06%이상 (92세대) ※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(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93호, 2022.12.12.) ● 주거전용면적 40㎡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의 30% 이상을 건설할 것									

[3] 그 외 사항은 정정내용 없음.

[4]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은평구정비사업신속추진과(☎ 02-351-7482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www.eum.go.kr>) 및 서울도시공간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 등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